

간호학과 발전위원회 운영내규

제정 : 2015.03.01

개정 : 2018.03.01

개정 : 2019.07.10

개정 : 2021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개정 : 2024.03.01

제1조(명칭) 이 위원회는 “대원대학교 간호학과 학과발전위원회(이하 위원회)”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내규는 위원회의 조직,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은 대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(발전위원회 위원장 포함 각 위원회 위원장), 미래전략처장(당연직) 지역사회 인사, 학부모, 간호학과 동문, 재학생 대표 등 간호학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간호학과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1.03.01., 2024.03.01.>

②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24.03.01.>

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. 위원장은 간호학과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로 정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위원수의 1/2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결원으로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임무)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. <개정 2021.03.01.>
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,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대원대학교 간호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

1. 학과 비전과 미션의 수립
2. 학과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
3. 장단기 발전계획 성과의 분석 <개정 2023.10.16.>
4. 장단기 발전을 위한 현안 심의
5. 장단기 발전을 위한 제반 정책의 기획
6. 장단기 발전을 위한 활동의 지원
7. 발전기금에 관한 제반 사항 <개정 2019.07.10.>
8.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계획 <개정 2023.10.16.>
9. 교수 복지 관련 사항 <신설 2023.10.16.>
10. 교수 업적 및 역량개발 지원 관련 사항 <신설 2023.10.16.>
11. 기타 장단기 발전과 관련된 사항

제7조(회의) ① 정기 회의는 년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>

② 수시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결과를 학과 교수회에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, 2024.03.01.>

제8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과 장에게 서면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 한다.

② 이 내규의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 운영내규를 소급적용한 것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